



"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"

서울에너지공사

받는곳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보고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- 나. 사규관리규정 제4조(입안)

2. 위와 관련,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받은 '성희롱 예방지침'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붙 임	1. 성희롱 예방지침 전문	1부.
	2. 성희롱 예방지침 비교검토표	1부.
	3.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업무처리 매뉴얼	1부.
	4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	1부. 끝.

사원

허수진

김사흘

정록성

김용남

박진섭